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- 39호

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30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**조례명** :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대표 발의자 : 곽봉호 의원)

2. **발의의원 : 곽봉호 의원, 유재목 의원**

3. **개정이유**

○ 건축 단가 상승에 따라 경로당 신축 및 개축비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계획수립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신축 및 개축비 상향(안 제4조제3항)

- 30년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, 30년 미만이라도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,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 500미터 이상이고 이용노인이 10명이상인 경우
  : **당초 1억 3천만원 이내 → 변경 2억원 이내**
-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가 500미터 미만, 이용노인이 10명 이상, 보조사업자가 건축비용의 30%이상 부담하는 경우
  : **당초 7천만원 이내 → 변경 1억원 이내**

○ 지원계획수립 구체화(안 제5조)

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☎043-730-3941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 · 단체일 경우 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붙임 1.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2. 의견서 1부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 중 “냉·난방,양곡비”를 “냉·난방, 양곡비, 보험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1억 3천만원”을 각각 “2억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후단 중 “7천만원”을 “1억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”을 “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경로당 운영비 지원
2.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
3.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
4.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경로당 지원) ① (생 략)	제4조(경로당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운영비 및 냉・난방,양곡비	4. ------- 냉・난방,양곡비, 보험료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신축・개축비, 전・월세금의 지원 요건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-----.
1. 신축・개축비: 보조사업자가 마을소유의 부지를 확보	1. ----------
가. 30년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: 1억 3천만원 이내	가. ---------- 2억원 ----------
나. 30년 미만이라도 건물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: 1억 3천만원 이내	나. ---------- 2억원 ---------
다.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고 이용노인이 10명 이상인 경우: 1억 3천만원 이내	다. ---------- 2억원 -------
라.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	라. ----------

가 500미터 미만. 이용노인이 10명 이상. 보조사업자가 건축비용의 30퍼센트 이상 부담하는 경우: 7천만원 이내	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1억원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원계획수립) 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5조(지원계획수립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---------- ----------.
<신 설>	1. 경로당 운영비 지원
<신 설>	2.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
<신 설>	3.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
<신 설>	4.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생년월일 :

○ 주　　소 :

○ 연 락 처 :
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조례안 내용	의　　견	비고